

예 산 총 칙

2019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45,836,280	13,375,088
일반회계	415,812,114	12,474,363
특별회계	30,024,166	900,725
기타특별회계	30,024,166	900,725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891,374	26,741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77,905	2,337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5,390,334	461,710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3,508,146	105,244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621,035	18,631
향평공영터미널운영특별회계	107,391	3,222
상수도특별회계	5,424,187	162,726
수질개선특별회계	88,576	2,657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3,915,218	117,457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616,612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0,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